

약관 변경 수시 공시

1. 대상투자신탁 : BEST 국공채 신종 MMF II 5호 (개인가입용)
BEST 국공채 신종 MMF CH-4호 (법인가입용)

2. 변경 내용 : MMF 투자대상 중 국공채의 최저편입비 삭제

3. 변경내용 대비표

현 행	변 경
<p>제 36 조(투자대상등)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규정한 다음 각목의 <u>유가증권 (이하 국공채라 한다)</u>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이상을 투자한다. 가. 국채증권 나. 통화안정증권 다.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.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.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.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사. 다만, 라목 및 마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</p>	<p>제 36 조(투자대상등)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규정한 다음 각목의 <u>유가증권 (이하 국공채라 한다)</u>에 투자한다. 가 ~ 사 (좌동)</p>

4. 변경 시행일 : 2005. 5. 10.

조흥투자신탁운용(주)